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2900,2012다121917 판결 [2012다12900(본소)

부당이득금반환등
2012다121917(반소) 부당이득금반환등
]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5.선고 2011나2229(본소),2011나32657(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4.3.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하였다.

1.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무효,취소 및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①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이고,②옵션의 가치,수수료,제로코스트나 환 해지 부적합성 등에 관한 기망,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반소피고,이하'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구조 자체가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뿐만 아니라 기존계약의 위험성을 확대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임에도 피고(반소원고,이하'피고'라고만 한다)는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부분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므로 구조적으로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과 관련해서도 ①원고의 2007년 및 2008년 수출실적은 각 2억 4,000만 달러 수준이고, 달러 유출액을 제외한 순 달러 보유액 역시 각 1억 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커서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 회피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②원고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 체결 전에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측 계약담당자인 a은 피봇 통화옵션계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른 통화옵션상품과 비교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 점,③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원고가 체결한 2007.8.3.자 통화옵션계약의 중도청산금 14만 달러를 프리미엄으로 반영하여 재구조화한 것이지만, 원고는 2007.8.3.자 통화옵션계약의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차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자체적인 전망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현실적인 청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점,④2007.8.3.자 통화옵션계약의 중도청산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구조화된 이 사건 통화옵서계약의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내용 및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환율변동에 관한 자신의 예측에 따라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합성 원칙이나 고객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옵션의 이론가와 수수료의 규모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옵션의 가치 및 숨은 수수료와 관련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취득하는 옵션의 기대이익보다 훨씬 큰 기대손실을 가지는 옵션을 피고에게 부과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전보다 더 높은 환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피고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옵션의 이론가보다 더 큰 이론가를 지닌 옵션을 피고에게 부여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전 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여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